
**주기적 지정제도 관련
기업 감사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**

2020. 10. 13

주기적 지정제도 관련 기업 감사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
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1조 -

I. 현황

- 정부는 기업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‘표준감사시간제’, ‘주기적 지정제’ 등을 골자로 하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(이하 신외감법)을 지난 2018년 11월부로 도입하였음.
- 신외감법 도입과 함께 시행된 ‘표준감사시간제’로 기업들의 감사시간과 비용이 동 제도 시행 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*.
 - * 창원지역 상장기업 36개사 중 2018년 대비 2019년 감사시간이 늘어난 업체가 26개, 감사비용이 증가한 업체가 24개임.
- 또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‘주기적 지정제**’의 대상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올해 첫 감사를 받고 있음.
 - ** 전국의 상장사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한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음.

II. 문제점

- 2018년 ‘표준감사시간제’ 시행으로 기업들의 감사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‘주기적 지정제’가 병행되면서 관련 비용이 급증하였음. ‘주기적 지정제도’로 지정받은 감사인과 계약 시 감사보수가 자유선임에 비해 적게는 1.5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에 이르는 실정이며, 특히 중·소규모 상장사의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임.
 - * 금감원 보도자료('19. 2. 18.)
지정감사 시 전기 자유감사 수입보다 평균 250% 상승
대형회사(자산 1조원 이상) 169% 증가, 중·소형회사(자산 1조원 미만) 253% 증가

- 관련 기업들은 해당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, 법률개정 이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단순히 감사비용만 급증한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.
- 더불어 지역기업의 경우 지정감사인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는 관계로 현장 감사에 소요되는 각종 실비를 전액 지불하고 있어 부담이 한층 가중됨.
- 최근 코로나19 등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의 매출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, 이와 같은 영업외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활동성을 더욱 위축시킬 것임.

Ⅲ. 건의

- 이에 지정감사인 제도의 도입취지 달성은 물론 지역 상장법인의 감사비용 경감을 위해서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에 한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해준 감사인을 1개 사업연도만 선임하되, 감사 중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면 감사인이 최대 2개 사업연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3항**에 대한 예외 적용을 건의드립니다.

**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3항(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)

2020년 10월 13일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